『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90

제출일자 : 2023. 2. 6.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3. 7월 금천청소년문화의집(임대공간) 개관 예정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명칭	설치 장소	시설규모	개소시기 (예정)	비고
금천청소년	시흥대로 164	연면적 818㎡	'23년 7월	3층, 4층
문화의집	(시흥동 904-22)	(전용 490㎡, 148평)		일부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위탁내용 :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

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자치활동 지원 등

나. 관내 학교,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및 법인 등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

다. 기타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4) 운 영 비 : 107백만원(구비)

※ 개관일정 단축(10월→7월) 추진에 따른 추가 운영예산 소요 예상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나.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직업체험 등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 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가 조성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가.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복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가위탁 추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나. 민간위탁 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하며, 외부기관 및 청소년 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폭넓은 운영이 가능함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나. 기타사항
 - 신독신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및 운영 계획 【이동청소년과 1348】
 - 청소년문화의집(임대공간) 조성 변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계획 [이동청소년과-6821]
 -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이동청소년과-1418】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6.7.18>
-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6.7.18.>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 4. 민간위탁 기간
- 5. 수탁자 선정방식
-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본조신설 2020.7.17]

제6조(수탁기관 선정)

- ① <u>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u>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u>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u>로 한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u>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련 근 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u>청소년</u>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다목)

다. 청<u>소년문화의 집</u>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 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